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5호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이스포츠(전자스포츠)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라. 이스포츠 발전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설치·운영(안 제5조)
- 마. 포상(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77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hellen8762@korea.kr

붙임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1부. 끝.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강릉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홍보·마케팅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이스포츠의 체계화
2. 생활 이스포츠 대회 등 국내 이스포츠 대회의 활성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